

법경제연구회

2022년 6월 22일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정승영

목차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 I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I 로봇세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1.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비롯됨

- *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가정과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음
- * 일자리가 극적으로 줄어들 경우,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반대 견해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영역상 변화(단순 작업 → 창의적 활동)으로 전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으나, 소득과 소비의 전체량이 줄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함

-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극도의 소득/소비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 *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AI 또는 Algorithm 역할 기능 강화 문제 →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불확실함 [State v. Loomis Case(2017, Wisconsin) / IBM Watson]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Legal Tech가 사건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한 사례

IDEAS 2016

When Algorithms Take the Stand

A case soon to be decided by the Wisconsin Supreme Court considers the proper role of mathematical prediction in the courtroom—and beyond.

MEGAN GARBER JUN 30, 2016



DAMIR SAGOLJ / REUTERS

Wisconsin Supreme Court Case : Accept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for Sentencing
State v. Loomis,
881 N.W.2d 749 (Wis. 2016)

In February of 2013, Eric Loomis was found driving a car that had been used in a shooting. He was arrested; he pleaded guilty to eluding an officer and no

* 출처 : The Atlantic (2016)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전 산업영역에서의 AI 영향 사례 : IBM Watson

Put AI to Work

Watson is the best AI for the job.

[Explore Offerings](#)

News & Resources

* 출처 : IBM WATSON (2018)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 단순 특례 축소와 Robot Tax 연관 사례

Korea's Robot Tax

24 Aug 2017 at 11:30 BST

South Korea's government has made the first move towards introducing a "robot tax", which, if it goes into effect, would be a world first.

It's an idea that's been proposed and recommend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One of the most enthusiastic proponents of it has been none other than Bill Gates. Essentially, in an effort to allay the fears of automation, factories that replace human jobs with robots would still have to pay an amount of tax to replace the income tax that is being lost. Along with universal basic income, it's a possibility that we're headed for in the robotics revolution, and South Korea looks to have taken the first step.

- 출처 : The Robotics Law Journal (2017)
- <http://www.roboticslawjournal.com/news/koreas-robot-tax-95236145>

Technology Intelligence

South Korea introduces world's first 'robot tax'

Share | Save

- 출처 : The Telegraph UK(2017)
- <https://www.telegraph.co.uk/technology/2017/08/09/south-korea-introduces-worlds-first-robot-tax/>

Robot Tax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 사례로서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를 Robot Tax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사례임

다만, 해당 조세특례 축소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Robot Tax와 전혀 관련이 없음

-R&D,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을 축소하는 목적이 Robot 때문이라면 Robot Tax가 될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저널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지적한 경우

INNOVATION

South Korea 'robot tax' is no tax at all; it's a warning of looming automation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plans to reduce a tax incentive for businesses investing in automation. While it aims to help human workers, it sends mixed signals.

By Brandon Vigorek | August 11, 2017, 7:21 AM PST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 로봇세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2. 로봇세(Robot Tax) 의 개략적인 구성 방향

로봇세 (Robot Tax) 개략적인 구성 방향

- 로봇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음
 - * 로봇과 법인 간의 구별 문제(?)
 - * 로봇이 만들어 낸 창출 수익력에 대한 과세 or 로봇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과세 → 결정 필요
- 로봇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가정할 때, 세법상 '로봇'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할 것인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식-생각-동작 패러다임(the "Sense-Think-Act " Paradigm)의 반영 결과물

세법상 로봇세 (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 로봇세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1/3)

1
로봇에 대해서 별도 과세 필요

2-1
소득과세 유형
-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

로봇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2-2
거래 및 자산과세 유형
- 취득세(거래세적 성격 혼합)
- 등록면허세
- 재산세

생산수단인 자산으로서 로봇이 가지는 가치의 거래, 보유과세

두 가지 유형의 과세방식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3-1
2-1) 소득과세 체계 활용 여부 검토

3-2
2-2) 거래세 및 재산세 체계 활용 여부 검토

세법상 로봇세 (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 로봇세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2/3)

3-1
소득과세 체계에 따른 흐름
- 법인세
- 소득세(사업소득)

3-1-1
법인세 과세

3-1-2
소득세(사업소득) 과세

로봇에 대해서 세법상 간주된
법인격이 있다고 하여 접근

생산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소득세 과세 체계 내에서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비용공제 제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Robot Tax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돌아가게 됨

① 소득세(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경우(3-1-2)에는
고용 없이 지능형 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를 별도로 설정할 사유가
사라짐 (다른 생산수단을 이용한 과세 체계 활용 / 세정상의 효과성 및 효율성)

② 로봇을 생산 또는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적정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로 접근

- (세율 조정 : 예시) 적정 고용 인원을 설정한 후, 적정 고용 인원 대신 로봇을 사용 시에는 추가 세율
적용
- (비용공제 부인 : 예시) 적정 고용 인원을 설정한 후, 감가상각비용 부인 방식 등

③ 결과적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는 로봇세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됨

- 로봇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고자 한다면, '법인' 과세 방식이 오히려 차후 E-personality 제도 체계와
부합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 로봇세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3/3)

3-2
거래 및 자산과세 체계에 따른 흐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3-2-1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거래세/자산과세 형태 혼합

3-2-2
재산세
- 자산의 보유과세

취득세의 경우, 현재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고려

등록면허세의 경우, 취득세의
기계장비 이상의 범위 포함

재산세 과세 범위 확대 (로봇 추가)로
매 과세연도 재산가치 평가 필요

해당 내용의 기본적인 전제

Robot은 별도의 인격이 성립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단순
생산수단(자산)으로만 취급
하고자 하는 것임

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거래과세>(3-2-1)에서는

- 기계장비(취득세), 기계장비, 특허권, 영업권 등(등록면허세)와 같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과세하도록 범위가 일부 확장되어 있으나,
-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를 하려면, 등기/등록 등을 전제하고 있거나(등록면허세), 재산의 취득(취득세)이
필요함

② 재산세<자산의 보유과세>(3-2-2)에서는

- 재산세의 과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며(현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위주)
- 매 과세연도 재산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잔존함(수익창출금액 Base로 하는 평가 체계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 체계 존재(M&E Tax, 日本 固定資産稅)

목차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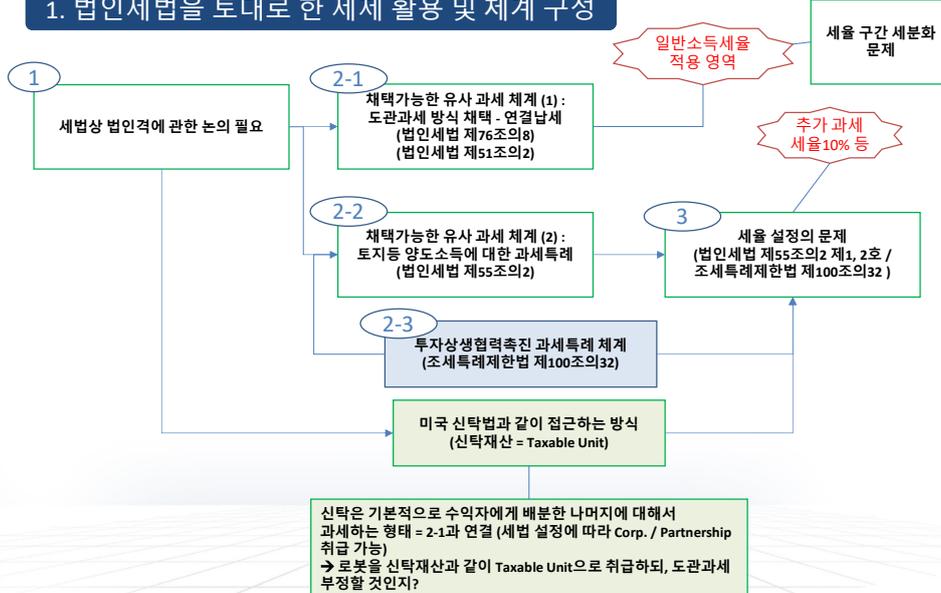
I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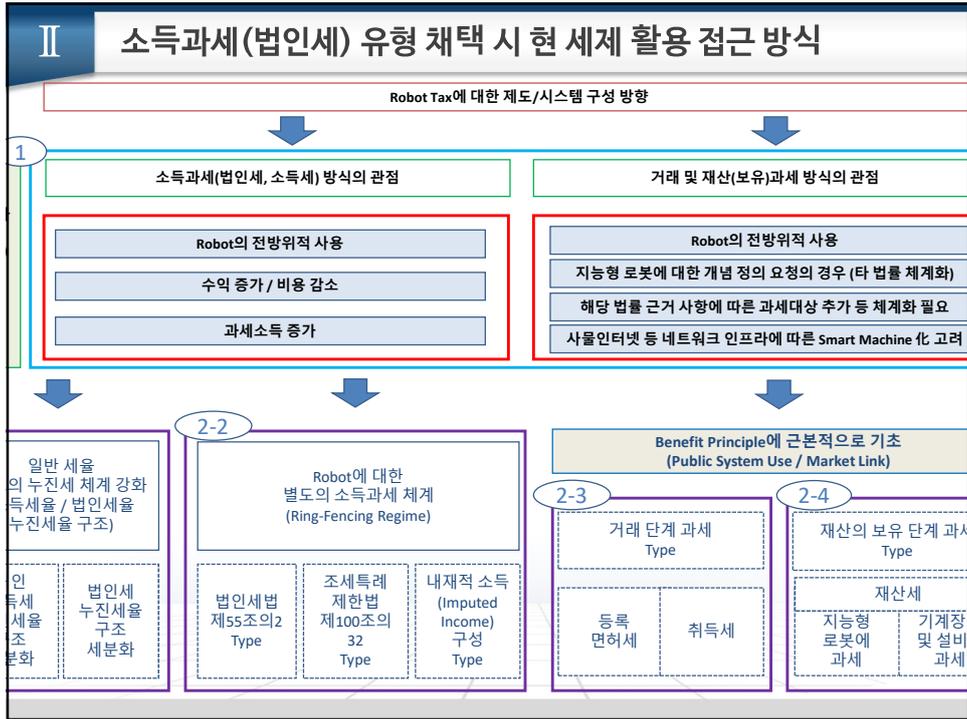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1. 법인세법을 토대로 한 세제 활용 및 체계 구성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1/3)

세법상의 법인격에 관한 조항(국세기본법 제13조 등)

세법상 법인격은 민사법상의 법인격과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님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은 '단체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
- 다만, '법인' 은 법으로 인정한 인(人)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에 따라 '법인' 이 되는 것임 [상법상 주주 1인 회사도 설립 가능한 상황]
 - ⇒ 세법을 통해 지능형 로봇이 법인격을 가진 것을 간주할 수 있음

: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 가능

① 앞서 살펴보았던..미국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 방식에 대한 생각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파트너십 과세 방식(동업기업의 경우, 집합투자자의 경우)
→ 단체성에 기초한 법인세를 빌리고는 있지만, 투자재산에 가까운 상황 (Special Purpose Company)의 실제 운용 구조 생각

③ (법인의 단체성에 기초하여 유도하는 방식 예시) Robot이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or 특정 매출에서 고용 인원이 일정 인원 수 이하인 경우
→ Robot을 출자자산으로 하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 (1인 회사형 단체 설립 강제)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2/3)

로봇을 법인으로 볼 경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법인이 소유한 로봇에 대한 접근 방식 : 연결납세방식 (법인세법 제76조의8)

- 다른 내국법인(완전주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 → 지방국세청장 승인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함
- (연결납세방식) 수익, 비용이 완전하게 공유되는 상태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간주 (법인세법 제1조 제6호)
- 로봇이 생산하여 창출하는 수익을 '로봇' 을 단위로 하여 분리하지 않으면, 현행 법인세법상 당연하게 하나의 법인 과세 단위의 과세 대상임 ⇒ 해당 방안 채택의 효과성/효율성 저하

로봇 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것처럼 취급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위 경우에도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 등 법인이어야 함 : 단체성이 전제되어 있음
- 수익분배(배당 90% 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관과세
 - ⇒ 로봇의 경우, 도관과세 대상 형 법인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음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3/3)

로봇을 법인으로 볼 경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Robot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세 과세 체계에서 수익을 과세하는 방안은 법리상 가능함.

다만, 현재 법인세법에서처럼 도관과세 대상(특수목적법인)이거나, 연결납세가 성립하게 되는 법인세 과세논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됨

- 법인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집합 투자를 위한 'Investment Scheme'으로, 본연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법으로 인정되어 Taxable Unit이 되는 구조임
- 그러한 이유에서 완전지배효과(완전자회사)가 있거나, 특정한 목적에서 법인이 수익 대부분을 배당해버리는 구조를 가진 법인(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배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임
- 그렇다면, Robot이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를 가진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도관과세의 법리나 연결납세의 법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됨 → 굳이, 개별적인 Taxable Unit을 설정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Type)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2) Type

-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만 분리하여 추가 과세 **☞ 추가과세 세율 10%**
- 로봇이 생산하여 창출하는 수익을 '로봇' 을 단위로 하여 분리하지 않으면, 현행 법인세법상 당연하게 하나의 법인 과세 단위의 과세 대상임 **☞ 해당 방안 채택의 효과성/효율성 저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Type

-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미환류소득으로 분리하여 추가 과세 **☞ 추가과세 세율 20%**
- 다음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 * [기업소득 × (60~80% 범위 내 지정 : 현재 70%) -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 공제합계액] × 세율 20%
 - * [기업소득 × (10~20% 범위 내 지정 : 현재 15%) - 임금, 상생협력 등 공제합계액] × 세율 20%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

- 유사과세체계 활용의 근본적인 문제

로봇이 가치창출 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 로봇이 가치창출하는 부분과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창출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 **분리예시)** 미환류소득과 유사하게 인위적인 산정방식 체계를 활용해본다고 한다면,

$$\text{기업소득} \times * [10\sim 20\% \text{ 범위 내 지정}] - (**\text{간주 임금 등 공제합계액}) = \text{로봇으로 인한 소득}$$
 - ☞ * 기업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전적으로 로봇 사용에 따라 추가 이익이라는 점을 의제하는 방식
 - ** 간주 임금(상대적으로 로봇이 활용되지 않는 산업의 임금 산정액에 따른 임금액 :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리는 일종의 차익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임)
- ▶ [위와 유사한 방식의 과세 체계 :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 적정 보수(Remuneration)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체계 (IMF 제안 방식)]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계 활용 접근 방식

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스위스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사용가치 내재적 소득 계산 및 과세 사례 [Switzerland DBG(Bundesgesetz über die direkte Bundessteuer) Artikle 21(1)(b)]

-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주거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과세하는 논리 구조임
- 지능형로봇에 대체하여 접근해본다면, 인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지출 금액만큼을 경제적 수익으로 산정하여 내재적 소득이라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대체된 인간 노동자의 임금비용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난점이 발생하게 됨
 - ☞ 특정 산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인간 노동자의 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계 활용 접근 방식

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과세 방식 채택

비용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과세소득으로 포착되는 부분도 늘어나게 됨

- 굳이 세계 내에 복잡한 장치를 구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봇을 이용한 24/7 생산 또는 서비스 구조가 형성되면 감가상각에 따른 상쇄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제도 장치와 구조를 채택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별도로 구현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짐
 - ☞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세율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됨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현 세제 활용 접근 방식

5. 지능형 로봇 사용에 대한 소득과세와 세율 세분화

✓ 세율 세분화와 지출 구분 필요성

-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과세 제도 내에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분리된 과세 소득 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나쁜 복잡성만 가중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 ② 지능형 로봇을 사용하여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근로자 사용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지는 상황이 도래함
 -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따라 소비가 줄어들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가정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 형성되는 구조라고 볼 여지도 있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함
- ③ 그렇다면 지능형 로봇을 생산단계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과세의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임
 - 다만, 지출 측면에서 복지체계(예를 들면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를 보완하는 장치로 해당 재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할 여지가 있음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목차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 I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논의될 수 있는 제도 구성 방향
- II 소득과세(법인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및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1. Benefit Principle에 따른 과세 고려

☑️ 특정의 지리적인 지역을 분할하여 접근할 때,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Benefit Principle"이 제시됨

응익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부기관, 제도의 환경 등 사적인 부 축적과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 조건과 조세부담 간의 추상적 유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논리로 확장되고 있음 (the new and expanded version of the benefit principle ; Dodge 2005)

- 간략하게 말하자면, 제도와 제도를 운영하는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따라 형성된 경제환경 등을 통해 Benefit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Tax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임
- 그렇다면, 현재 지능형로봇법이 단순한 산업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해당 대상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갖춘 법률로 확장하여 개편되고, 이에 맞춘 제도 환경 형성과 과세를 연결하는 논리로 제시될 수 있음 →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추가 기반**
- 위와 같은 구조에서 일정한 자산대장을 통해 보유과세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한편, 지능형 로봇은 앞서 설명한 "인식-판단-동작"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데, 동작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어느 지리적 지역이 특정될 수 있음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및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2. 현행 과세대상과의 중첩관계 고려

☑️ 지능형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하게 되면, 실제 지능형 로봇과 현재 취득세,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중첩될 수 있음

현재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부동산과 등기, 등록제도로 관리되는 일부 재산에 한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항공기, 선박 + 자동차(자동차세)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선박, 지능형 항공기, 지능형 기계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분류상의 각각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지능형 사물(기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용으로 쓰이는 자산 중 지능형 사물 중 과세대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누어지는 셈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 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및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3. M2M Network와 모든 사물의 스마트화

사업용 유형자산 전부가 Smart Things가 되고, Network로 연결되어 지시받고, 지시를 내리거나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전제) **현실적인 제도 설계 관점 - 대체 방안으로서의 기계세 (Machinery & Equipment Tax)**

사업용 유형자산 전부가 스마트기기(Smart Things)가 되는 경우, 네트워크로 통합 연결되는 환경을 고려

- "인식-판단-동작"패러다임(the"Sense-Think-Act " Paradigm)을 고려하면서,
-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M2M Network)도 감안하여 보면,
- 모(母) 인공지능 시스템(Mother AI System)에서 지시한 명령이 Smart 사물(기기)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구현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됨

그렇다면 사업용 유형자산 중 일부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발생 **오히려 미국 일부 연방 주와 일본이 Robot Tax를 위한 기반 제도 체계가 있는 셈**

- 미국 연방주들 중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Taxation on Machinery & Equipment)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세에서 사업용 유형감가상각자산을 고정자산세 과세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각종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항공기, 대형특수자동차,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모두 포섭됨 [감가상각과세대장(償却資産課税台帳)에 등록하여 관리]

III 거래 및 자산과세(취득세 및 재산세) 유형 채택 시 접근 방식

4. 거래과세 및 자산과세에서의 한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에서의 한계

취득세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유형(有形)재산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
- 혁신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 on Innovation)가 거래비용 증가로 위축되는 문제

등록면허세 과세에서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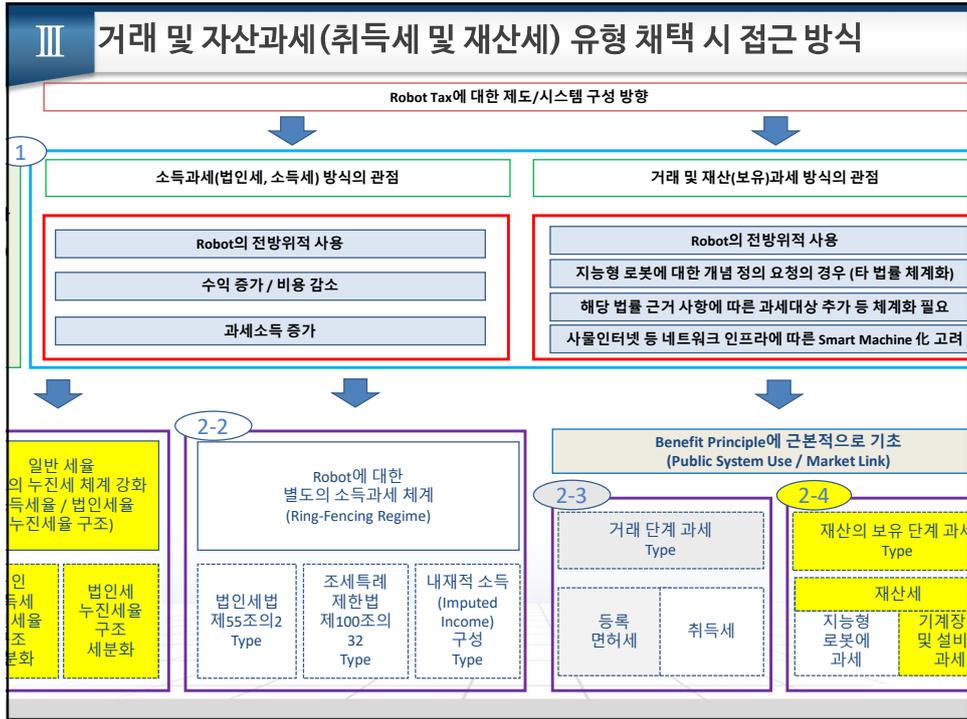
- 지능형 로봇법이 현재의 산업 촉진과 윤리 체계 구현 등 수준이 아니라, 지능형 로봇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담은 법률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지고 있음

자산과세(보유세)에서의 한계

재산세 과세가 없다면 해당 과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과 그에 대한 연장 논의

- 미국에서 M&E Tax(재산세)가 과세되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비교한 연구 사례 :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그 조세비용에 따른 금액이 고용효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재산세가 낮아진만큼의 금액 부분을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투자할 뿐, 신규 고용에 투자하지는 않음 (재산세 과세하는 기간보다 고용 수준이 낮아지는 효과 초래)**
- 한편, 신규고용에 따른 효과가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보다 생산효용이 일반적으로 낮고, 이미 자동화된 산업체계 때문에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고용 유도 현상도 기대하기 어려움

제한 검토



감사합니다